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2844

발의연월일: 2020. 8. 10.

발 의 자 : 홍성국・양정숙・전용기

홍영표・박영순・이수진비

김경만 • 남인순 • 박성준

윤관석 · 강민정 · 김민석

윤재갑 · 정청래 · 이용우

의원(15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소유하지 않은 상장증권의 매도를 금지하나,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차입한 상장증권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매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 고 있음.

그런데 무차입공매도 등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는 바, 과태료는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금전제재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시키는 불법공매도 행위를 처벌하기에는 부족한 제재이며 과태료 수준 또한 그 금액이 불법공매도를 통해 얻은 금전적이득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임.

이에 불법공매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상향하고, 과징금액 기준을 주문금액으로 하는 한편, 형사처벌의 근거 를 마련함으로써 불법공매도가 무거운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형성하고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임(안 제429조의2 및 제443조제1항).

#### 법률 제 호

##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429조의2의 제목 "(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과징금)"을 "(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에 대한 과징금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 또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- 1.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매도 주문 금액
- 2.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수탁한 공매도 주문금액

제44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 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에	제429조의2(시장질서 교란행위 등
<u>대한 과징금)</u> (생 략)	<u>에 대한 과징금)</u> <u>①</u> (현행 제목
	외의 부분과 같음)
<u> &lt;신 설&gt;</u>	② 금융위원회는 제180조를 위
	반하여 상장증권에 대하여 허용
	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공매도
	를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
	한 자 또는 공매도 주문을 수탁
	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
	구분에 따른 위반금액을 초과하
	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
	부과할 수 있다.
	1. 공매도를 하거나 위탁한 경
	우에는 제180조를 위반한 공
	매도 주문금액
	2. 공매도 주문을 수탁한 경우
	에는 제180조를 위반하여 수
	탁한 공매도 주문금액
제443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	제443조(벌칙) ①
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	
이상의 유기정역 또는 그 위반	
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	
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	
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. 다만,	,

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 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 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 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원으로 한다.

1. ~ 9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②·③ (생 략)

1. ~ 9. (현행과 같음)
10. 제180조를 위반하여 상장증
권에 대하여 허용되지 아니하
는 방법으로 공매도를 하거나
그 위탁 또는 수탁을 한 자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